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(안)

의안 번호	1298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11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○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2. 제안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○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 개요
- 설치년도 : 2007. 1. 1.
- 설치목적 :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- 설치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, 노인복지법 제4조

○ 기금운용계획 총괄 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			지출계획			
계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예치금 회 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융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예치금
2,065,426	55,000	1,970,547	24,879	15,000	2,065,426	27,954	100,000	1,937,472

○ 기금조성규모 (단위 : 천원)

2016년도 말 조성액 ⓐ	2016년도 조성계획		증감 ⓓ=ⓑ-ⓒ	2016년도 말 조성액 ⓔ=ⓓ+ⓐ
	수입 ⓑ	지출 ⓒ		
1,970,547	94,879	127,954	△33,075	1,937,472

4. 내 용

○ 별 첨 【2017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】

의안심사보고서
(의안번호 1298)

1. 의 안 명 :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11. 11.(금)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다. 위원회 회부 : 2016. 11. 16.(수)
라. 위원회 심사 : 2016. 12. 2.(금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기금운용계획 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	지출계획			
계	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예치금회수	이자수입	기타수입	계	비융자성사업비	융자성사업비	예치금
2,065,426	55,000	1,970,547	24,879	15,000	2,065,426	27,954	100,000	1,937,472

❍ 기금조성규모 (단위 : 천원)

2016년도 말 조성액 ⓐ	2017년도 조성계획		증감	2017년도 말 조성액
	수입 ⓑ	지출 ⓒ	ⓓ=ⓑ-ⓒ	ⓔ=ⓓ+ⓐ
1,970,547	94,879	127,954	△33,075	1,937,472

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익희)

❍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